

‘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’ 수립·시행

〈주요 내용〉

-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‘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’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도모
- '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, 에너지화시설 21개소 확충을 통해 국정목표인 자원화율 91%, 공동자원화율 17% 달성
-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'16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, '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
 - ※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'17년부터 시비처방 후 액비 살포 의무화
-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관리기구 설립(15년), 전국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, 가축분뇨 컨설턴트 300명 육성
-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 재 설정 등 제도개선, 가축분뇨 자원연구 사업단 구성·집중투자, 소비자·경종농가 중심의 홍보 강화
 - ※ 가축분뇨 배출, 수집·운반, 처리 및 재활용 사업장 처리과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계제도 도입, 지자체별 가축분뇨 자원화 시책 평가 및 포상 등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‘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’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〈기본 방향〉

- ◆ 先, 지역별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필요한 시설 확충 → 後, 가동율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집중 ◆
- '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등 확충을 통해 국정목표인 자원화율 91%, 공동자원화율 17% 달성
 - '16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, '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를 통해 고품질 액비 생산·유통 활성화

- 그간 가축분뇨는 환경 폐기물의 개념에서 자원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,
 - ※연도별 자원화율(%) : ('06) 82.7 → ('08) 84.3 → ('10) 86.6 → ('12) 88.7
 - ※연간 1일 100톤씩 사용할 경우, 요소비료 18,646포 대체(386백만원 절감)
- '12.1.1일부터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'06년부터 '11년까지 261만톤을 감축하여 제로화를 달성하였고, 잘 부숙된 액비에 대한 농가 신뢰 회복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분위기를 확산하였음
 - ※연도별 해양배출량(만톤) : ('06) 261 → ('08) 146 → ('10) 107 → ('12) 0
 - ※경종·축산 협약체결(개소) : ('06) 20 → ('08) 70 → ('10) 100 → ('12) 120
- 하지만, 최근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,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고품질·맞춤형 퇴·액비 수요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적합한 대책이 필요함
 - 이에 따라,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, 시·도 및 시·군 담당자와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등 이해관계자 협의(4차례) 등을 거쳐 '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'을 마련하였음
- 금번 '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'은 4개 대과제 및 16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,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① 퇴·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시설 확충을 통해 자원화율 91%, 공동자원화율 17% 목표 달성
 - 공동자원화시설은 '17년까지 총 150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50만톤의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기반 구축
 - 에너지화시설은 '17년까지 총 21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4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한 후, 약 84백만kW 전기 생산·활용
 - 액비유통센터는 '17년까지 287개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, '18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품질향상 도모
 - 개별농가 정화시설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보완(약 400농가 예상) 지원방안 마련
 - ※T-N(총질소) : (개정전) 850mg/l → ('16년) 500mg/l → ('19년) 250mg/l
 - 기존 시설 중 5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시설은 '14년부터 개보수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하고, 사업시행 지침서에 반영

② 고품질 퇴 · 액비 생산체계 구축

-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'16년부터 공공자원화시설, '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비료 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
- '17년부터 전체 액비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을 받은 후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도록 의무화
- 액비 수요처 확대를 위해 도시형 베란다 농장 수요처(기능성 액비) 개발 · 보급, 분뇨 사용 농산물 판매망 구축 등 추진

③ 민간전문관리기구 설립 등 사후관리 체계 개선

- 가축분뇨 업무를 전담하는 (가칭) 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준비단 운영('13년 상반기), 제도 및 예산 확보('14년) 후, '15년부터 출범
- 지역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전산 관리(Agrix)를 통해 지자체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
- '17년까지 가축분뇨 컨설턴트 300명 육성, '16년부터 자격증 제도 도입 및 가축분뇨 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 육성

④ 제도개선, R&D 확대 및 평가 · 포상 등

-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비료공정 규격에 따른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 재 설정, 친환경 농장재 허용, 사업지침 등 보완
- 공동자원화율 확대 등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농진청과 함께 '가축분뇨 자원연구 사업단'을 구성, 집중 투자(230억원)
- 가축분뇨 배출, 수집 · 운반, 처리 및 재활용 사업장 처리과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계제도 시범 운영('13년, 환경부 주관)
- 지자체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 · 도 및 시 · 군 가축분뇨 시책 평가 · 포상('14년부터)
- 축산농가 보다 소비자 또는 경종농가 중심의 '가축분뇨 퇴 · 액비 우수성 홍보대책' 마련, 연중 찾아가는 홍보시스템 구축('13.6월)

■ 농식품부는 국정과제인 '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'을 위해 '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'의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품질 퇴 · 액비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환경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창조산업으로 육성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고,

-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(가스 또는 전기)를 생산할 계획임
- 끝으로 금번 대책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, 가축분뇨 협의회, 농협중앙회, 생산자단체, 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,
 - 5~6월 중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적용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시 보완할 계획임
 - 다만,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증진을 위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시비처방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에 따른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

참고 1 빈출 질의, 답변

1. 금번 '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'의 기본방향과 정책목표는 무엇인지?
 - 그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('12.1.1)에 맞춰 품질제고와 현장지도 보다는 처리시설·장비 확충을 중점 추진해 왔음
 - 이에 따라, 고품질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는 한편,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및 시비처방 도입 등을 통해 품질을 향상하여 수요를 확대하고,
 - 민간관리기구 설립, 가축분뇨 컨설턴트 육성 및 지역단위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코자 함

2.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및 개별농가 시비처방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?
 - 부숙이 미흡한 액비 살포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고, 고품질 액비 생산·공급을 위해 제도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
 - 비료생산업 등록 시행 이전에 시설개선 및 액비살포비의 액비보조금 제도 전환 등을 통해 참여 확대 유도
 -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공급을 확대하여 자율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의무화에 따른 부담 최소화
 -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교육·홍보 등을 통해 액비에 대한 인식전환 후,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조기 정착할 계획임

참고 2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(요약)

<목 표>

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

<추진전략>

- 축산 현실에 맞게 기술수준,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시기 등에 대해 단계별 접근 또는 차등적용
- 민간중심의 자율관리 체계로 전환하되, 정부는 계획수립 ·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 · 관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

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

-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 설치
- 에너지화시설 21개소 설치
- 정화처리시설 400개소 보완

고품질 퇴 · 액비 생산체계 구축

-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
- 개별농가 시비처방 단계적 도입
- 작목별 액비 살포기준 마련

사후관리 체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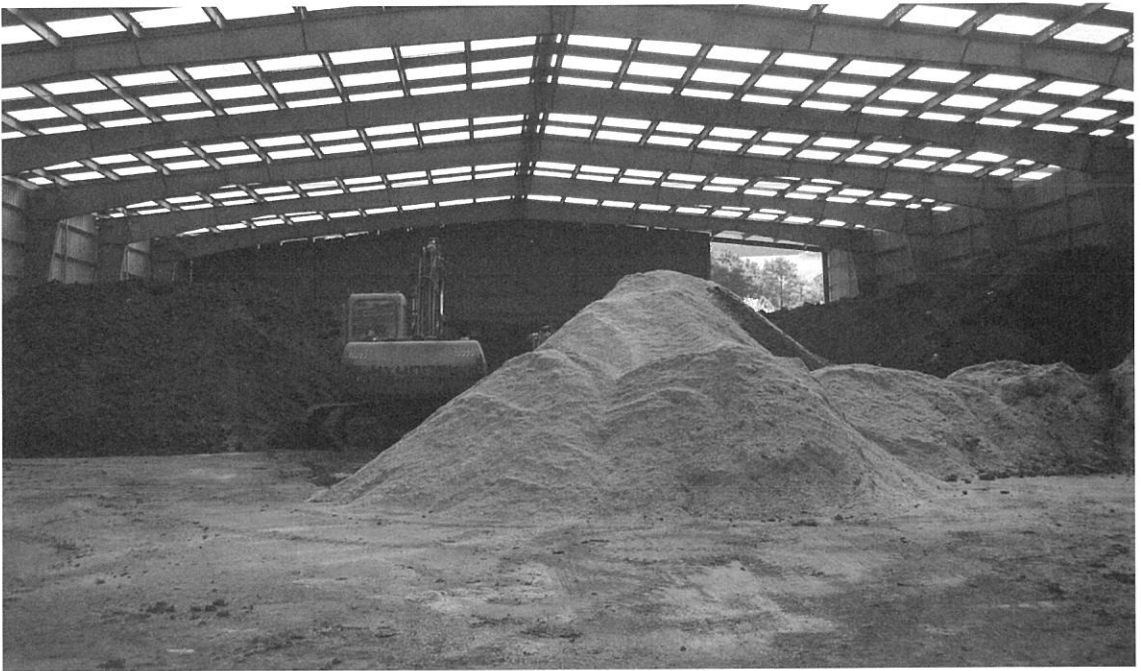
- 민간중심의 관리조직 설립
- 컨설팅 전문인력 300명 육성
- 지역단위 종합관리체계 구축

제도개선, R&D 확대 등

- 가축분뇨법 등 관련제도 개선
- 수요자 중심의 R&D 과제 확대
- 지자체 평가 · 포상, 홍보 강화

1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

- **(총괄)** '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등 확충을 통해 자원화율 91%, 공동자원화율 17% 목표 달성
- **(공동자원화)** '17년까지 총 150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50만톤의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기반 구축
 - ※(현행) 액비화 30억원 · 퇴비화 45억원 / 70톤 → (변경) 퇴액비화 40억원 / 100톤
- **(에너지화시설)** '17년까지 총 21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4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한 후, 약 84백만㎾ 전기 생산 · 활용
 - ※(현행) 70억원 / 70톤 → (변경) 50억원 ~ 200억원 / 50톤 ~ 200톤
- **(액비유통센터)** '17년까지 총 287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248만톤의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



포할 수 있는 유통체계 기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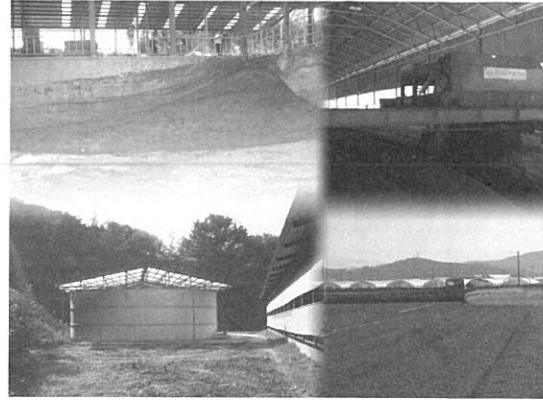
- (개별농가 정화처리시설)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사업에 정화시설 지원항목 신설 병행 추진
· ※T-N(총질소) : (개정전) 850mg/l → ('16년) 500mg/l → ('19년) 250mg/l
- (노후시설 개보수) '14년부터 노후시설 개보수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하고, 사업시행 지침서에 반영하여 지원

2 고품질 퇴·액비 생산체계 구축

- (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) '16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, '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
- (시비처방 제도화) '17년부터 전체 액비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을 받은 후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도록 의무화
- (액비 수요처 확대) 액비수요의 집중,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여 연중 액비 살포 및 수요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

3 사후관리 체계개선

- (전문관리기구 설립) 가축분뇨법 개정('13년)을 통해 설립 근거 마련, 설립준비단 구성('13년 상반기)을 통해 기반구축 후, '15년부터 운영
- (통합관리체계 구축) 지역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전산관리(Agrix)로 지자체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(전문가 육성) '17년까지 가축분뇨 컨설턴트 300명 육성,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 도입, '16년부터 가축분뇨 컨설팅지원사업추진



4 제도개선, R&D 확대, 평가·포상 등

- (제도개선) '가축분뇨 발효액' 기준 재설정, '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' 개정, 일선 현장에 맞도록 사업지침 보완
- (R&D 확대) 공동자원화율 확대 등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농진청과 함께 '가축분뇨 자원연구 사업단'을 구성, 집중투자(230억원)
- (전자인계제 도입) 관리시스템 개발 및 장비 구축 후, 제주도내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(3년간, 환경부 주관)
- (지자체 평가·포상) 지자체 평가기준 및 지표 등 '지자체 포상계획' 수립('13.10월), 시상금 예산 반영('13.12월) 및 사업 시행('14.1월)
- (홍보강화) '가축분뇨 퇴비·액비 우수성 홍보대책'을 마련('13.6월)하여 연중 찾아가는 홍보시스템 구축

5 향후 추진계획

- '증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' 보도자료 배포(5.2)
- 관련 법령 정비 등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적기 추진('13.5월~) ㉠